

체육시설운영관리규정

제정 : 2011.05.01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14.07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 체육관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11. 22., 2020. 03. 01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체육관 및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득한 외부인에 적용한다. <개정 2020. 03. 01.>

제3조(이용원칙) 체육관 및 체육시설의 모든 시설물과 기구는 학생의 수업과 실습을 위하여 우선 이용하며 학생의 수업이나 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이용에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본 대학교 각종 공식행사 <개정 2020. 03. 01.>
2. 본 대학교 교직원의 체육활동 <개정 2020. 03. 01.>
3. 본 대학교 학생 및 학생단체의 체육활동 <개정 2020. 03. 01.>
4. 사무처장의 승인을 득한 단체 및 개인 <개정 2014. 07. 01., 2020. 03. 01.>

제2장 시설운영 및 관리

제4조(관리감독) 체육관 및 체육시설의 운영 관련 제반사항은 사무처장이 관리·감독한다. <개정 2014. 07. 01.,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5조(개방시간) 체육관 및 체육시설의 개방은 07:00부터 20:30까지로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사무처장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07. 01., 2020. 03. 01.>

제6조(시설이용 허가신청) 체육관 및 체육시설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
제7조(이용자 수칙) 체육관 및 체육시설의 시설 및 기구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세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8조(시설사용료) 체육관 및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세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
제9조(기자재의 반출금지) 체육관 및 체육시설에 비치된 비품은 사무처장의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. <개정 2014. 07. 01., 2020. 03. 01.>

제10조(변상조치) 체육관 및 체육시설에서 시설물 및 기자재 손·망실이 발생할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

1. 수업 중이나 실습도중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·망실의 경우 : 담당교수 책임 하에 변상조치를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2. 외부 단체 사용 시 손·망실이 발생할 경우 : 외부 단체장 책임 하에 변상 조치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1조(외부사용자 시설사용 시의 준수사항) ① 수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절대 금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허가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시간과 정원을 준수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③ 본 대학교 교직원의 해당 지적사항을 준수한다. <개정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12조(부상 및 분실물) 체육관 및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상과 분실물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. <개정 2020. 03. 01.>

제13조(기타 사항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방침에 의한다. <개정 2014. 07. 01.,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 대학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<개정:2020.03.01>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